

세무와회계저널  
제6권 제4호 2005년 12월 pp.237~262  
한국세무학회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조세효과분석

오기수\* · 윤석곤\*\*

### 〈요 약〉

본 논문은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의 법인세율 인하 추세를 살펴보고, 법인세율이 인하되는 추세에서 2005년의 세율인하효과,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조세효익이 발생할 수 있는 외형규모, 그리고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의 조세절감효과의 크기와 조건에 대해서 사례분석을 하고자 한다.

2005년도에 소득세율은 1%씩 인하되고 법인세율은 2%씩 인하되면서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세부담이 같아지는 과세표준의 크기는 3,000만원에서 2,250만원으로 약 25% 정도 감소하였다. 2005년의 법인기업의 세율인하효과는 과세소득 1억까지는 2004년도보다 총조세부담액이 약 13.3% 정도 감소하며, 과세소득 2억까지는 총조세부담액이 약 9.2% 정도 감소하였다. 2005년도 법인전환효과를 살펴보면 과세소득이 1억인 경우에는 개인기업보가 10,300,000원의 조세절감효과를, 과세소득이 2억인 경우에는 20,300,000원의 조세절감효과가 있다. 2004년도와 법인전환효과를 비교하면 법인세율이 2%인하 소득세율 1% 인하의 차이만큼인 1%의차이가 발생하였다. 분석에 의하면 세율인하된 2005년도에는 전체기업 평균으로 외형크기가 약 5억2천만원 이상인 경우 법인으로 전화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외형의 규모가 제조업은 4억3천만원, 건설업은 6억7천만원, 판매업은 9억5천만원, 음식업은 3억9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조세부담이 줄어들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분석에 따르면 법인전환효과를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경우는 법인기업이 사업주의 급여를 계상하면서 법인세차감후소득을 전액 유보하는 경우이다. 그러면 사업주의 급여를 어느 정도 계상하는 것이 법인전환효과를 가장 많이 볼 수 있을까. 그리고 법인기업이 사업주의 급여를 최대한 계상하면서 나머지 법인소득을 유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기업의 과세소득(급여공제전)이 1억원일 경우 60%를 사업주의 급여로 지급하며, 나머지 세차감후소득은 유보하는 경우 법인전환효과가 11,270,000원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과세표준이 1억원일 경우 과세표준율이 가장낮은 보건업은 1.1%로 외형은 90억9천만원이며, 반대로 과세표준율이 가장 높은 전기·가스·수도업은 10.8%로 외형은 약 9억2천만원이다. 그리고 제조업의 과세표준율은 5.2%로 외형은 약 19억2천만원이다.

<주제어> 법인세, 법인기업, 법인전환

\* 김포대학 세무회계정보과 부교수, okyes@kimpo.ac.kr, 031-999-4177, 주저자

\*\* 남서울대학교 경영세무학부 부교수, sgyoon@nsu.ac.kr, 041-580-2142

## I. 서 론

### 1. 연구목적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생산·판매하는 생산경제의 단위체로서 기업활동에 관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법률적인 관점에서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으로 구분된다. 즉, 기업활동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가 개인에게 귀속되는 형태의 기업을 개인기업이라 하며, 기업이 소유자와 독립된 법인격을 갖고 스스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형태의 기업을 법인기업이라 한다.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은 금융·신용거래·자금조달·조세·공과·책임한계 등의 제반 경제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법인기업은 주식의 상장 또는 협회등록 등에 의하여 대규모의 자본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므로 사적 신용에 기초를 둔 개인기업보다 유리하다. 반면 개인기업의 과세에는 인적공제규정을 적용하는데 비하여 법인에는 적용을 하지 아니하는 점 또는 낮은 과세표준에는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점 등 일정규모를 넘어서기 전까지는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에 비하여 조세나 공과금의 부담이 더 적은 측면도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기업의 시작을 개인기업으로 한 사업이 일정 수준이 지나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생각하게 된다.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시점은 그 업종별 특성이나 환경요인 등의 종합적인 고려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획일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지만 각종 실익성을 분석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는 이유는 기업의 대인신용도 제고와 자본조달의 원활화·다양화 등 기업경영에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조세적 측면에서 조세절감소 등의 요인도 고려된다.

최근 우리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기업 의욕을 획기적으로 되살려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의욕을 강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많은 국가들이 법인세율의 인하를 통해 기업의 자본비용을 줄여줌으로써 국내에 투자한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의 자본 및 기업을 유치하며, 국내자본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국제 자본시장에서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주요 경쟁국은 거의 예외 없이 낮은 세율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세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법인세율 개편이 심각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2005년부터 법인세의 경우 1억원 이하의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15%에서 13%로, 1억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27%에서 25%로 각각 2%의 세율을 인하하였다. 법인세율 인하는 세계적인 추세로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의 법인세율은 1억원 이하의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20%, 1억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34%이었는데 그 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소득세의 경우에는 2005년부터 1%씩 낮아져 최저 8%에서 최고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의 법인세율 인하 추세를 살펴보고, 법인세율이 인하되는 추세에서 2005년의 세율인하효과,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조세효익이 발생할 수 있는 외형규

모, 그리고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의 조세절감효과의 크기와 조건에 대해서 사례분석을 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제2장에서는 각국의 법인세율 인하 추세를 먼저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현행세법에 의한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세무회계상 차이를 알아본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조세효과의 사례분석에 의하여 현행 법인세율이 인하되는 추세에서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조세효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매출규모를 분석하고,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조세혜택의 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 위하여 다음 표와 같은 사례에 의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 2. 선행연구와 연구방법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선행연구는 여러 나라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안종석에 의하면 최근의 선진국 조세정책은 국내 저축 및 투자 촉진과 고용증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고용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세정책의 근간은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전반적으로, 그리고 항구적으로 인하하는 것이다. 또한 전반적인 세율인하 및 누진도 완화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 한계세율 35%, 법인세 최고세율 25%로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국제 자본시장에서 자본을 유치하고 고급 인력의 국내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경쟁의 관점에서 보면 선진국보다는 주변의 경쟁국들과 세부담을 비교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안종석(2004)·최준욱(2003)에 의하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 법인세 한계유효세율이 25% 수준(고속상각의 경우)인데 비해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 투자한 기업의 한계유효세율은 5~19%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다. 그러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법인세율을 더욱 큰 폭으로 인하하는 계획을 제시하여 기업의 장기적인 투자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김진수·박형수·안종석(2003)에 의하면 투자를 촉진하여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려면 법인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세정책의 개편은 재정정책의 변화와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외국이나 우리나라의 실증분석 결과들을 보면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세입감소를 보충하는 방법에 따라 법인세율 인하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인세율인하정책을 수행할 때는 그 시기 선택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조세 이외의 여러 가지 정치·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투자가 기대 수익률에 대해 비탄력적인 경우 법인세율 인하는 투자촉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서 기존 투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으로 인한 세수감소만을 초래할 뿐이다.

박형수(2004)는 법인세율인하에 대한 쟁점을 분석하면서 2005년도부터의 2% 법인세율인하는 그 필요성이 확인되었지만,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법인세율 인하는 임시방편이나 정치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아니되며, 단계적·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추진하되 조세·재정제도 정비, 국내외 기업들에 대한 투자환경 개선 등과 함께 종합적인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법인세율 인하와 개인기업이 법인전환에 미치는 세무회계조건과 조세절감효과의 크기를 함께 고찰하고자 한 것이다.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과세표준율에 따른 업체의 유형과 외형규모에 의하여 법인전환의 조세효익을 분석하여야 한다. 나아가서는 법인소득의 어느 정도를 배당하고 유보할 것인가, 대표이사의 급여는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고려되어야만 법인전환에 따른 적정한 조세 절감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 II. 각국의 법인세율 인하 추세

### 1.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인하

2003년말 법인세율을 법인법의 개정으로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3%,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로 기존세율보다 2%를 인하하여 200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이유는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성장잠재력의 확충을 통하여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이와같이 최근 법인세율 인하가 주장되고 있는 이유는 대체로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이다.

첫째, 기업의 투자 증대를 통해 경기를 부양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같은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인세율 인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인세율 인하 주장은 주로 우리 경제가 침체국면에 처해 있을 때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그 필요성이 제기되곤 했었는데, 특히 최근에 와서 외환위기 당시에 못지않을 정도로 체감경기가 침체되면서 정부, 재계, 학계 등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법인세가 기업의 순수익률을 낮춤으로써 새로운 투자를 축소시킨다는 논리에 근거를 둔 것이다.

둘째,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외국인투자의 관점에서 주요 경쟁국보다 법인세율이 높아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기업에 비해서 자기자본에 대한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를 상대적으로 많이 부담한다면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 주요 경쟁국에 비해 높은 상태여서 외국의 자본 및 기업유치와 국내자본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국가간 조세경쟁(tax competition)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김진수·박형수·안종석, 2003, p.23~24).

〈표 1〉 1990년도 이후 법인세율 변화

| 개정연도 |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 비고         |
|------|------------------------------------|------------------------------------|------------|
| 1990 | 과세표준 1억원 이하 20%<br>과세표준 1억원 초과 34%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10%<br>과세표준 3억원 초과 15% |            |
| 1993 |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8%<br>과세표준 1억원 초과 32%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18%<br>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            |
| 1994 |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8%<br>과세표준 1억원 초과 30% |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8%<br>과세표준 1억원 초과 25% |            |
| 1995 |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6%<br>과세표준 1억원 초과 28% |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6%<br>과세표준 1억원 초과 25% |            |
| 1997 |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6%<br>과세표준 1억원 초과 28% | 좌동                                 |            |
| 2001 |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5%<br>과세표준 1억원 초과 27% | 좌동                                 |            |
| 2003 |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3%<br>과세표준 1억원 초과 25% | 좌동                                 | 2005년부터 적용 |

<표 1>에 따르면 1990년말 세법개정에서는 방위세의 폐지에 따른 세수보전을 위해서 높은 세율이 34%로 인상되는 대신 과표기준금액이 8천만원에서 공개·상장법인 중 대주주 지분율 35% 이하인 법인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5천만원 초과소득에 대해서는 33%의 세율을 적용하는 우대조치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1993년말 세법개정에서는 같은 해 8월에 실시된 금융실명제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이유로 세율을 다시 18%와 32%로 인하하였다. 이어서 1994년에는 세계무역기구의 출범에 대비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8%와 30%로 인하하였으며 1995년에는 다시 한번 16%와 28%로 인하하였다. 또한 2001년말 세법개정에서는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 추세에 부응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시 법인세율을 1%p 인하하며 1억원 이하의 법인소득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을 적용하고 1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7%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었다. 조합법인에 대해서는 12%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표 1>과 <표 2>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의 인하는 1990년도 이후 지금까지 다섯 번 일어났지만 소득세의 인하는 단 두 번이다.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의 개정 폭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의 크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정도를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법인세가 소득세보다 세율인하의 폭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1990년도 이후 소득세율 변화

| 개정연도 | 세율                        | 비고 |
|------|---------------------------|----|
| 1990 | 과세표준 400만원 이하 5%          |    |
|      | 4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16%   |    |
|      | 1,000만원 초과 2,500만원 이하 27% |    |
|      | 2,5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38% |    |
|      | 5,000만원 초과 50%            |    |
| 1995 | 과세표준 1,000만원 이하 10%       |    |
|      |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20% |    |
|      |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30% |    |
|      | 8,000만원 초과 40%            |    |
| 2001 | 과세표준 1,000만원 이하 9%        |    |
|      |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18% |    |
|      |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27% |    |
|      | 8,000만원 초과 36%            |    |
| 2004 | 과세표준 1,000만원 이하 8%        |    |
|      |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17% |    |
|      |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26% |    |
|      | 8,000만원 초과 35%            |    |

## 2. 다른 나라의 법인세율 인하

법인세 제도의 변화는 1980년대 중엽 미국과 영국이 각각 법인세 최고세율을 34%와 35%로 인하함으로써 시작되었는데, 이후 다른 국가들도 경쟁적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였다. 특히 선진국 중 최고세율이 40%이상이었던 국가들은 대부분 1990년대에 세율을 대폭인하하여 대체로 30~40%의 세율을 유지하게 되었다.

<표 3>에 의하면 2000년대 들어서도 법인세율 인하 추세는 지속되었는데 캐나다는 2000~2004년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8%에서 21%로 인하하고, 독일은 2001년에 25%로 인하하였다. 아일랜드는 2001년 20%, 2002년 16%, 2003년 12.5%로 순차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였으며. 벨기에는 39%이던 기준세율을 2003년 33%로 인하하였다.

〈표 3〉 OECD 국가 법인세 최고세율 변화추이

(단위 : %)

| 국가      | 1986 | 1991 | 1995 | 2000 | 변동폭<br>(86~00) | 비 고           |
|---------|------|------|------|------|----------------|---------------|
| 호 주     | 49   | 39   | 33   | 34   | △15            | '02년 : 30%    |
| 오스트리아   | 30   | 30   | 34   | 34   | 4              |               |
| 벨 지 움   | 45   | 39   | 39   | 39   | △6             |               |
| 캐 나 다   | 36   | 29   | 29   | 28   | △8             | '04년 : 21%    |
| 덴 마 크   | 50   | 38   | 34   | 32   | △20            |               |
| 핀 란 드   | 33   | 23   | 25   | 29   | △4             |               |
| 프 랑 스   | 45   | 42   | 33   | 33   | △12            |               |
| 독 일     | 56   | 50   | 45   | 40   | △16            | '01년 : 25%    |
| 그 리 스   | 49   | 46   | 40   | 40   | △9             |               |
| 아이슬랜드   | 51   | 45   | 33   | 30   | △21            |               |
| 아 일 랜 드 | 50   | 43   | 40   | 24   | △26            | '03년 : 12.5%  |
| 이 태 리   | 36   | 36   | 36   | 37   | 1              |               |
| 일 본     | 43   | 38   | 38   | 30   | △13            | '03년 : 27.23% |
| 한 국     | 30*  | 34   | 30   | 28   | △2             | '05년 : 25%    |
| 룩셈부르크   | 40   | 33   | 33   | 37   | △3             |               |
| 멕시코     | 34   | 34   | 34   | 35   | 1              |               |
| 네덜란드    | 42   | 35   | 35   | 35   | △7             |               |
| 뉴질랜드    | 45   | 33   | 33   | 33   | △12            |               |
| 노르웨이    | 28   | 27   | 19   | 28   | 0              |               |
| 포르투갈    | 47   | 36   | 36   | 32   | △15            |               |
| 스페인     | 35   | 35   | 35   | 35   | 0              |               |
| 스웨덴     | 52   | 30   | 28   | 28   | △24            |               |
| 스위스     | 10   | 10   | 10   | 8    | △2             |               |
| 터키      | 46   | 49   | 25   | 33   | △13            |               |
| 영국      | 35   | 34   | 33   | 30   | △5             |               |
| 미국      | 46   | 34   | 35   | 35   | △11            |               |
| 평균      | 41   | 35   | 33   | 32   | △9             |               |

자료 : 2004.01.29 재정경제부 자료 및 각국 인터넷 자료 참조

주 : 지방세 제외

\* 방위세(7.5%) 포함시 37.5%

<표 4>에 의하면 중국의 법인세율은 일본을 제외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하여 비교적 높은 33%이다. 이 중 과세소득의 3%에 해당하는 세액은 중앙정부가 징수하여 지방정부에게 배분하게 되므로 중앙정부에게 배분되는 국세로서의 법인세는 과세소득에 대하여 3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지방세를 포함한 최종세율이 33%이다. 홍콩의 경우에는 1997-1998회계연도까지 16.5%의 법인세율을 유지하였으나 1998-1999 회계연도부터 법인세율을 16%로 인하하였다가 최근의 범세계적인 법인세율 인하 움직임과는 달리 2003-2004 회계연도 부터는 17.5%로 법인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싱가포르의 경우 점진적으로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하여 왔으며, 2003년 현재 22%의 법인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대만의 영리사업소득세(profit-seeking enterprise income tax)는 다른 나라의 일반적인 법인세 제도와는 다르게 기업, 개인사업자, 조합 및 여러 형태의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과세구간 및 세율구조를 보면 우선 연간 과세소득이 5만NT달러 이하인 영리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면제되며, 10만NT달러 이하의 과세소득에 대해서는 15%의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25%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말레이시아의 경우 28%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아시아 주요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법인세 기준으로는 중국과 말레이시아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며, 지방세를 포함하는 최종세율로는 중국 다음으로 높다(김진수·박형수·안종석, 2003).

<표 4> 2003년 기준 각국의 법인세 최고세율 비교

(단위 : %)

| 국 가     | 법인세율(%) | 지방세포함(%) |
|---------|---------|----------|
| 한 국     | 27      | 29.7     |
| 중 국     | 30      | 33       |
| 홍 콩     | 17.5    | 17.5     |
| 싱 가 포 르 | 22      | 22       |
| 대 만     | 25      | 25       |
| 말레이시아   | 28      | 28       |
| 미 국     | 35.0    | 40.8     |
| 영 국     | 30      | 30       |
| 프 랑 스   | 33.33   | 34.33    |
| 독 일     | 26.5    | 47.48    |
| 일 본     | 30      | 40.87    |
| 캐 나 다   | 23      | 38.16    |
| 이 탈 리 아 | 34      | 38.25    |
| 아 일 랜 드 | 12.5    | 12.5     |

자료 : IBFD, European Tax Handbook 2003 및 각국 인터넷 자료

최근의 기업과세 정책 변화는 선진국의 유효법인세율을 크게 인하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에 의하면 회원국의 법인세 한계유효세율이 1991년 평균 31.4%에서 1996년 26.6%, 2001년 22.8%로 인하되었다. 또한 세부담 인하는 투자증대 및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가 발표한 정책실험 결과를 보면 법인세부담을 GDP의 1%만큼 인하하고 그만큼 경상이전지출을 줄일 경우 경제성장률이 0.03~0.09%증가한다. 그러나 법인세 부담 변화가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는 엇갈린 의견이 존재한다. 초기연구에서는 조세가 외국인 직접투자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가 다수인데 비해 1980년대 이후에 미국 등 선진국을 대상으로 수행한 실증분석에서는 대체로 조세가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안종석, 2004, pp. 26~28)

### III.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세무회계상 차이

#### 1. 개인기업이 세무회계상 유리한 경우

##### 가. 소규모 기업인 경우

##### (1)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나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및 기장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등의 사유에 의하여 추계결정·추계경정하는 경우에 법인기업과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기업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여야 한다. 하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개인기업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 ①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②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 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 및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7천200만원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4천800만원
  - ㉢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3천600만원

## (2) 간편장부대상자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장부를 비치하고 복식부기에 의하여 이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빙서류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하지만 다음의 개인사업자는 매출액 등 수입·경비지출·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장할 수 있다.

- ①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②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결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 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3억원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5천만
  - ㉢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7천5백만원

## 나. 소득원천설에 의한 소득 산정

소득세법은 과세소득을 정함에 있어서 소득원천설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이 정한 범위 내의 소득에 대하여만 사업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소득세법에 정하지 아니하는 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바, 예를 들면 농업소득 중에서 작물생산업(흔히 농업소득)의 소득을 들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소득을 구성하는 것이라도 예를 들면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기타소득, 근로소득 등은 당해 소득이 실령 사업소득과 관련이 있다하더라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분리과세를 하며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은 별도의 체계에 의하여 분류과세된다.

거주자의 사업용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이익 또는 투자자산의 처분손익은 이를 사업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대상이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마저 포함하지 아니하면 소득세의 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상장등록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의 양도인 경우 또는 장외거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인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한편 법인세법은 법인의 과세소득을 정함에 있어서 순자산증가설을 전제하고 있음으로써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법인의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의 분류를 따로 하지 아니하고 합산하여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으로 보며 유형자산 처분이익 또는 유가증권처분이익도 모두 위의 법인세율에 의하여 과세하는 대상에 포함한다. 단순히 보면, 소득세의 과세소득은 법인세의 과세소득의 범위보다 좁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근자의 소득세법의 변화를 보면 법인의 소득과 같이 과세대상이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종전의 소득세법에서 농업소득은 전부 소득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되었으나 지금은 작물생산업을 제외한 농업소득은 과세

대상소득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예이다<sup>1)</sup>.

실무상 소득세를 과세하는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함에 의하여 소득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볼 것이므로 법인과 개인의 사업상의 소득의 범위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종합하면 <표 5>과 같다.

<표 5> 소득세와 법인세의 소득개념 비교

| 구 분                | 소득세                                                                                     | 법인세                                                                              |
|--------------------|-----------------------------------------------------------------------------------------|----------------------------------------------------------------------------------|
| 소득개념               | 소득원천설, 열거주의 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유형별 포괄주의 과세                                               | 순자산증가설, 포괄주의 과세                                                                  |
| 총수입금액              | ① 사업과 관련된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br>②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사용인, 타인에게 지급한 재고자산<br>③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인한 보험차익 등 | ① 법인세법은 사업무관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도 익금항목<br>② 법인세법은 익금항목이 아님<br>③ 법인세법은 사업무관 보험차익도 익금항목 |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 사업소득 계산시 제외                                                                             | 각사업연도 소득에 포함                                                                     |
| 유가증권처분익<br>고정자산처분익 | 총수입금액에 불산입                                                                              | 익금항목                                                                             |

## 2. 법인기업이 세무회계상 유리한 경우

법인을 우대하고자 하는 조세정책의 결과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인 경우 법인기업에 비해 개인기업이 세무상 불리하다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즉 매출액이 동일할 때 법인기업의 경우보다 개인기업의 경우에 세무관리가 강화되며 또한 소득세에 대한 누진세율 때문에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기업활동에 대한 개인기업의 세부담액이 법인기업보다 많다. 개인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기업에 대한 법인세의 조세부담의 차이는 세율구조와 소득의 범위 또는 손비의 범위와 관련한 과세표준결정구조 및 세액공제구조의 측면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리고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은 그 구조상 차이가 있어 동일한 이익이 발생하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기업의 형태에 따라 세부담액이 달라진다.

### 가. 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이 낮음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차이로 인하여 개인과 법인에게 일정 규모 이상의 동일한 이익이 발생한다고 할 때에는 실제로 납부하게 되는 세금액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총조세부담에서의 계

1) 소득세법 제19조

산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왜냐하면 법인세차감후소득을 주주에게 모두 배당한다면 오히려 일정규모 이상에서는 법인기업의 조세부담이 개인기업보다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소득의 일부를 유보하고 배당한다면 조세부담을 개인기업보다 적게 부담할 수 있다. 법인의 소득을 유보할 경우 주주의 소유한 주식의 가치는 높아질 것이다<sup>2)</sup>.

법인기업의 주주가 주식의 양도를 통하여 이익을 실현할 경우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은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10%이기 때문에 배당에 의한 조세부담보다 훨씬 적은 양도소득세율을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 나. 대표이사 급여의 손금산입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법인사업자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각각 영업이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이 두 법률이 정하는 세율과 과세소득의 계산의 차이로 인하여 개인과 법인에게 일정 규모 이상의 동일한 이익이 발생한다고 할 때에는 실제로 납부하게 되는 세금액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동일 소득이라면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세금을 절약한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할 수 있다.

또한 개인기업의 경우 사업주의 급여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지만 법인기업의 사업주(대표이사)의 급여는 손금에 산입된다. 따라서 개인기업의 사업주는 종합소득의 과세표준계산에서 기본공제와 표준공제만을 받을 수 있지만 법인기업의 사업주가 급여로 받을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근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기본공제는 물론이고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등 특별공제와 신용카드사용공제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인기업의 총조세부담이 적다.

#### 다.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손금 범위

손비는 원론상 법인이나 개인이나를 불문하고 당해 사업의 수익에 대응하는 손실과 비용 즉 손비를 망라하는 개념이므로 별도로 다를 것은 없다. 하지만, 소득세와 법인세의 경우 대응되는 비용의 범위가 서로 다르며, 법인세법상의 손금인정의 범위(즉, 손금불산입의 규정)와 소득세법의 손금인정의 범위(즉, 필요경비불산입의 규정)가 다르다. 그리고 소득에서 공제되는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범위가 서로 다르며, 소득세의 경우 필요경비를 결정함에 있어서 기본경비율의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법인의 경우에 비하여 필요경비의 적용범위가 현실적으로 제한되는 점도 있다. 이를 종합하면 <표 6>과 같다.

2) 정부에서는 과거 이러한 유보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의 유보소득이 적정유보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적정유보초과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산출세액에 이를 가산한다(2002년부터 삭제됨).

〈표 6〉 소득세와 법인세의 손금범위 비교

| 구 분                     | 소득세법                                                                                                                                              | 법인세법                                                                                              |
|-------------------------|---------------------------------------------------------------------------------------------------------------------------------------------------|---------------------------------------------------------------------------------------------------|
| 필요경비                    | ① 가사용소비 및 사용인, 타인에게 지급한 재고자산 원가<br>② 대표자 급여는 필요경비 불산입하며 대표자 가족급여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 산입함.<br>③ 가사관련경비 필요경비 불산입과 초과인출금(부채합계-자산합계) 관련이자는 필요경비 불산입 | ③ 법인세법의 업무무관경비 손금불산입과 같은 논리임                                                                      |
| 시설개체·기술 낙후로 인한 생산설비폐기손실 | 폐기시 : 필요경비 불산입<br>처분시 : 필요경비 산입(장부가액에서 처분가액을 차감한 범위내에서 필요경비 산입함)                                                                                  | 폐기시 : 1,000원을 공제한금액을 손금산입<br>처분시 : 1,000원 손금산입                                                    |
|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평가           | 평가차익 총수입금액 불산입                                                                                                                                    | 평가차익 익금산입                                                                                         |
| 퇴직급여충당금                 | 대표자는 설정 비대상                                                                                                                                       | 대표자도 설정대상                                                                                         |
| 대손충당금                   | 영업 관련 채권만 대손충당금설정(대여금이거나 고정자산처분 미수금은 영업거래가 아니므로 설정대상이 아님)                                                                                         | 대손가능성 있는 채권 설정                                                                                    |
| 일시상각충당금                 | 신고조정 규정 없음.                                                                                                                                       | 신고조정 손금산입                                                                                         |
| 출자자의 자금인출               | 개인사업자가 인출한 자금은 가지급금이 아님                                                                                                                           | 출자자가 인출한 자금은 가지급금                                                                                 |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①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br>② 건설자금이자<br>③ 초과인출금 관련이자<br>④ 업무무관자산 관련이자                                                                                         | ①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br>② 비설명채권, 증권이자<br>③ 기준초과차입금에 대한 이자<br>④ 건설자금이자<br>⑤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br>⑥ 업무무관자산 관련이자 |
| 기부금                     | 사립학교 등에 대한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와 불우이웃에 대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 사립학교 등에 대한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와 불우이웃에 대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

#### IV.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조세효과의 사례분석

##### 1. 사례분석 유형과 가정

법인세율이 인하되는 추세에서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조세효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매출규모를 분석하고,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조세혜택의 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 위하여 다음 표와 같은 사례에 의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 사례     | 내 용                                             | 고려 요소   |       |
|--------|-------------------------------------------------|---------|-------|
|        |                                                 | 사업주의 급여 | 배 당   |
| 사례 I   | 법인의 세차감후소득 전액을 유보처분 한다.                         | 고려 않함   | 고려않함  |
| 사례 II  | 법인의 세차감후소득 전액을 배당처분 한다.                         | 고려 않함   | 고려 함  |
| 사례 III | 법인 과세소득(급여공제전)의 60%를 사업주의 급여로 처리하고 잔액을 유보처분 한다. | 고려 함    | 고려 않함 |
| 사례 IV  | 법인 과세소득(급여공제전)의 60%를 사업주의 급여로 처리하고 잔액을 배당처분 한다. | 고려 함    | 고려 함  |

이러한 사례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정을 설정한다.

- ① 법인기업의 경우 사업주가 100% 주식을 소유한다.
- ② 사업주의 급여 이외는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의 임금과 손금처리는 같다.
- ③ 법인기업의 경우 세차감후소득은 전액 유보 또는 전액 배당한다.
- ④ 기업의 과세표준은 최고 2억까지만 고려한다.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할 때 가장먼저 고려하여야 점이 외형의 크기라고 본다. <표 7>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법인기업의 외형과 과세표준, 그리고 외형으로 과세표준을 나눈 과세표준율의 평균이다. 이 <표 7>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기업 전체평균으로 과세표준 2억원을 외형의 크기로 환산하면 우리나라 기업전체 평균은 약 46억원 정도, 제조업은 38억, 판매업은 83억원까지 고려하는 것이다.

〈표 7〉 업태별 외형에 따른 과세표준율(5년 평균)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외 형           | 과세표준        | 과세표준/외형 |
|-----------|---------------|-------------|---------|
| 합 계       | 7,796,478,885 | 333,687,268 | 4.3%    |
| 축산·수렵·임업  | 7,570,077     | 173,064     | 2.3%    |
| 수산업       | 8,783,209     | 211,786     | 2.4%    |
| 광 업       | 13,615,323    | 878,756     | 6.5%    |
| 제조업       | 2,886,573,753 | 149,461,532 | 5.2%    |
| 전기·가스·수도업 | 179,978,762   | 19,485,628  | 10.8%   |
| 건설업       | 693,749,418   | 23,077,943  | 3.3%    |
| 판매업       | 1,319,973,645 | 31,222,540  | 2.4%    |
| 음식·숙박업    | 29,073,231    | 1,641,940   | 5.6%    |
| 운수·창고·통신업 | 340,755,730   | 14,411,448  | 4.2%    |
| 금융·보험업    | 1,767,290,207 | 64,878,658  | 3.7%    |
| 부동산업      | 112,407,321   | 5,006,933   | 4.5%    |
| 서비스업      | 297,617,199   | 16,723,652  | 5.6%    |
| 보건업       | 42,074,993    | 482,719     | 1.1%    |
| 기 타       | 97,016,017    | 6,030,669   | 6.2%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업태별 법인세 신고현황, 2000년~2004년 참조

- ⑤ 사업주의 급여는 법인 과세소득의 60%로 한다. 과세소득이 1억인 경우에는 금액은 6천만원이며, 2억인 경우에는 1억2천만원이다.

## 2. 사례분석

### 가. [사례 I]

[사례 I]은 법인기업의 경우 사업주의 급여를 고려하지 않고 법인의 과세소득에서 법인세를 납부한 후 잔액을 기업내부에 유보하는 가정이다. <표 8>는 [사례 I]에 따른 2004년과 2005년도의 개인기업의 총조세부담액과 법인기업의 총조세부담액의 차이, 즉, 법인전환효과와 세율인하효과를 살펴본 것이다. 2004년의 경우 개인기업의 총조세부담액과 법인기업의 총조세부담액이 같아지는 과세소득은 3,000만원이며, 3,000만원 이하에서는 개인기업이 유리하며 그 이상이면 법인이 유리한다. 2005년의 경우 개인기업의 총조세부담액과 법인기업의 총조세부담액이 같아지는 과세소득은 2,250만원으로 낮아지며 그 이하면 개인기업이 유리하며 그 이상이면 법인이 유리하다. 이는 2005년도에 소득세율은 1%씩 인하되고 법인세율은 2%씩 인하되면서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세부담이 같아지는 과세표준의 크기는 3,000만원에서 2,250만원으로 약 25% 정도 감소하였다는 것이다. 2005년의 법인기업의

세율인하효과는 과세소득 1억까지는 2004년도보다 총조세부담액이 약 13.3% 정도 감소하며, 과세소득 2억까지는 총조세부담액이 약 9.2% 정도 감소하였다. 2005년도 법인전환효과를 살펴보면 과세소득이 1억인 경우에는 개인기업보가 10,300,000원의 조세절감효과를, 과세소득이 2억인 경우에는 20,300,000원의 조세절감효과가 있다. 2004년도와 법인전환효과를 비교하면 법인세율이 2%인하 소득세율 1% 인하의 차이 만큼인 1%의차이가 발생하였다.

〈표 8〉 [사례 I]에 따른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조세부담액 차이 비교

| 과세표준<br>(과세소득) | 2004년              |                       |                   | 2005년(세율인하후)       |                       |                   | 세율인하<br>효과<br>(나)-(가) |
|----------------|--------------------|-----------------------|-------------------|--------------------|-----------------------|-------------------|-----------------------|
|                | 개인기업<br>총조세<br>부담액 | 법인기업<br>총조세<br>부담액(가) | 법인전환효과<br>(개인-법인) | 개인기업<br>총조세<br>부담액 | 법인기업<br>총조세<br>부담액(나) | 법인전환효과<br>(개인-법인) |                       |
| 10,000,000     | 900,000            | 1,500,000             | -600,000          | 800,000            | 1,300,000             | -500,000          | -200,000              |
| 20,000,000     | 2,700,000          | 3,000,000             | -300,000          | 2,500,000          | 2,600,000             | -100,000          | -400,000              |
| 22,500,000     | 3,150,000          | 3,375,000             | -225,000          | 2,925,000          | 2,925,000             | 0 <sup>2)</sup>   | -450,000              |
| 25,000,000     | 3,600,000          | 3,750,000             | -150,000          | 3,350,000          | 3,250,000             | 100,000           | -500,000              |
| 30,000,000     | 4,500,000          | 4,500,000             | 0 <sup>1)</sup>   | 4,200,000          | 3,900,000             | 300,000           | -600,000              |
| 40,000,000     | 6,300,000          | 6,000,000             | 300,000           | 5,900,000          | 5,200,000             | 700,000           | -800,000              |
| 50,000,000     | 9,000,000          | 7,500,000             | 1,500,000         | 8,500,000          | 6,500,000             | 2,000,000         | -1,000,000            |
| 60,000,000     | 11,700,000         | 9,000,000             | 2,700,000         | 11,100,000         | 7,800,000             | 3,300,000         | -1,200,000            |
| 70,000,000     | 14,400,000         | 10,500,000            | 3,900,000         | 13,700,000         | 9,100,000             | 4,600,000         | -1,400,000            |
| 80,000,000     | 17,100,000         | 12,000,000            | 5,100,000         | 16,300,000         | 10,400,000            | 5,900,000         | -1,600,000            |
| 90,000,000     | 20,700,000         | 13,500,000            | 7,200,000         | 19,800,000         | 11,700,000            | 8,100,000         | -1,800,000            |
| 100,000,000    | 24,300,000         | 15,000,000            | 9,300,000         | 23,300,000         | 13,000,000            | 10,300,000        | -2,000,000            |
| 200,000,000    | 60,300,000         | 42,000,000            | 18,300,000        | 58,300,000         | 38,000,000            | 20,300,000        | -4,000,000            |

1) 법인세율 15%, 27%인 경우 계산 : 과세표준 = X,  $900,000 + (X - 10,000,000) \times 18\% = X \times 15\%$ ,  $X = 30,000,000$ 원

2) 법인세율 13%, 25%인 경우 :  $800,000 + (X - 10,000,000) \times 17\% = X \times 13\%$ ,  $X = 22,500,000$

〈표 9〉는 국세통계연보의 업태별 법인세 신고현황을 고려하여 외형(매출액)의 크기에 따른 과세표준의 비율을 살펴보고 과세표준이 3,000만원인 경우와 2,250만원인 경우의 외형 크기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기업의 외형이 최소 얼마정도인 경우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익한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전체 법인의 외형에 따른 과세표준율은 4.3%로 과세표준이 3,000만원인 경우의 외형은 약 6억6천만원 정도이며, 2,250만원인 경우에는 약 5억2천만원 정도이다. 외형에 따른 과세표준율이 가장낮은 보건의업은 1.1%로 과세표준이 3,000만원인 경우의 외형은 26억1천만원 정도이며, 2,250만원인 경우에는 약 19억6천만원 정도이다. 반대로 외형에 따른 과세표준율이 가장 높은 전기·가스·수도업은 10.8%로 과세표준이 3,000만원인 경우의 외형은 약 2억7천만원 정도이며, 2,250만원인 경우에는 약 2억8천만원 정도이다.

〈표 9〉 [사례 I]에 따른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조세부담이 일치하는 외형규모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외 형           | 과세표준        | 과세표준<br>/ 매출액 | 과세표준<br>3,000만원인 경우<br>외형(2004년) | 과세표준<br>2,250만원인 경우<br>외형(2005년) | 세율인하효과<br>(2004-2005) |
|-----------|---------------|-------------|---------------|----------------------------------|----------------------------------|-----------------------|
| 합 계       | 7,796,478,885 | 333,687,268 | 4.3%          | 701                              | 526                              | 175                   |
| 축산·수렵·임업  | 7,570,077     | 173,064     | 2.3%          | 1,312                            | 984                              | 328                   |
| 수산업       | 8,783,209     | 211,786     | 2.4%          | 1,244                            | 933                              | 311                   |
| 광 업       | 13,615,323    | 878,756     | 6.5%          | 465                              | 349                              | 116                   |
| 제 조 업     | 2,886,573,753 | 149,461,532 | 5.2%          | 579                              | 435                              | 144                   |
| 전기·가스·수도업 | 179,978,762   | 19,485,628  | 10.8%         | 277                              | 208                              | 69                    |
| 건 설 업     | 693,749,418   | 23,077,943  | 3.3%          | 902                              | 676                              | 226                   |
| 판 매 업     | 1,319,973,645 | 31,222,540  | 2.4%          | 1,268                            | 951                              | 317                   |
| 음식·숙박업    | 29,073,231    | 1,641,940   | 5.6%          | 531                              | 398                              | 133                   |
| 운수·창고·통신업 | 340,755,730   | 14,411,448  | 4.2%          | 709                              | 532                              | 177                   |
| 금융·보험업    | 1,767,290,207 | 64,878,658  | 3.7%          | 817                              | 613                              | 204                   |
| 부동산업      | 112,407,321   | 5,006,933   | 4.5%          | 674                              | 505                              | 169                   |
| 서비스업      | 297,617,199   | 16,723,652  | 5.6%          | 534                              | 400                              | 134                   |
| 보 건 업     | 42,074,993    | 482,719     | 1.1%          | 2,615                            | 1,961                            | 654                   |
| 기 타       | 97,016,017    | 6,030,669   | 6.2%          | 483                              | 362                              | 121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업태별 법인세 신고현황, 2000~2004년 참조

## 나. [사례 II]

[사례 II]에서는 법인기업의 사업주 급여를 고려하지 않고 법인세차감후소득 전액을 배당하는 가정을 분석한다. 배당소득세를 계산할 때에 귀속법인세(Gross-up) 제도를 채택한다. 귀속법인세(Gross-up)제도는 법인이 지불한 법인세를 주주의 배당소득으로 배당소득에 합산하고, 합산된 배당소득을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하여 주는 제도이다.

<표 10>은 [사례 II]에 따라 법인의 소득을 전액 배당처리 하는 경우 개인기업의 총조세부담액과 법인기업의 총조세부담액의 차이를 과세소득의 크기에 의하여 분석한 것이다.

2005년의 법인기업의 세율인하효과는 과세소득 1억원은 2004년도보다 총조세부담액이 약 1.2% 정도 감소하며, 과세소득 2억원은 총조세부담액이 약 1.1% 정도 감소하였다. 법인기업이 세차감후소득 전액을 배당하는 경우 법인전환효과를 살펴보면 2004년도의 경우 과세소득 1억원에서는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의 총조세부담액은 24,300,000원보다 736,000원이 감소한 총조세부담액은 23,564,000이다. 하지만 과세소득이 1억1천만원을 초과하면 오히려 법인기업의 총조세부담액이 개인기업보다 많다. 2005년도의 경우에도 과세소득 1억원에서는 역시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의 총조세부담액은 23,300,000원보다 32,500원이 감소한 총조세부담액은 23,267,500이다.

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법인기업의 사업주 급여를 고려하지 않고 법인세차감후소득 전액을 배당하는 경우 과세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면 법인전환효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법인소득 전액을 배당하는 기업은 없다는 것이다.

〈표 10〉 [사례 II]에 따른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총조세부담액 차이 비교

| 과세표준<br>(과세소득) | 2004년              |                       |                   | 2005년(세율인하후)       |                       |                       | 세율인하<br>효과<br>(나)-(가) |
|----------------|--------------------|-----------------------|-------------------|--------------------|-----------------------|-----------------------|-----------------------|
|                | 개인기업<br>총조세<br>부담액 | 법인기업<br>총조세<br>부담액(가) | 법인전환효과<br>(개인-법인) | 개인기업<br>총조세<br>부담액 | 법인기업<br>총조세<br>부담액(나) | 법인전환<br>효과<br>(개인-법인) |                       |
| 100,000,000    | 24,300,000         | 23,564,000            | 736,000           | 23,300,000         | 23,267,500            | 32,500                | -296,500              |
| 110,000,000    | 27,900,000         | 28,004,320            | -104,320          | 26,800,000         | 27,661,250            | -861,250              | -343,070              |
| 120,000,000    | 31,500,000         | 32,444,640            | -944,640          | 30,300,000         | 32,055,000            | -1,755,000            | -389,640              |
| 130,000,000    | 35,100,000         | 36,884,960            | -1,784,960        | 33,800,000         | 36,448,750            | -2,648,750            | -436,210              |
| 140,000,000    | 38,700,000         | 41,325,280            | -2,625,280        | 37,300,000         | 40,842,500            | -3,542,500            | -482,780              |
| 150,000,000    | 42,300,000         | 45,765,600            | -3,465,600        | 40,800,000         | 45,236,250            | -4,436,250            | -529,350              |
| 160,000,000    | 45,900,000         | 50,205,920            | -4,305,920        | 44,300,000         | 49,630,000            | -5,330,000            | -575,920              |
| 170,000,000    | 49,500,000         | 54,646,240            | -5,146,240        | 47,800,000         | 54,023,750            | -6,223,750            | -622,490              |
| 180,000,000    | 53,100,000         | 59,086,560            | -5,986,560        | 51,300,000         | 58,417,500            | -7,117,500            | -669,060              |
| 190,000,000    | 56,700,000         | 63,526,880            | -6,826,880        | 54,800,000         | 62,811,250            | -8,011,250            | -715,630              |
| 200,000,000    | 60,300,000         | 67,967,200            | -7,667,200        | 58,300,000         | 67,205,000            | -8,905,000            | -762,200              |

〈참고〉 과세표준이 1억원 경우 계산내역

| 항 목                 | 개정전(2004년)  |                         | 개정후(2005년)  |                          |
|---------------------|-------------|-------------------------|-------------|--------------------------|
|                     | 개인기업        | 법인기업                    | 개인기업        | 법인기업                     |
| 기업의 과세소득            | 100,000,000 | 100,000,000             | 100,000,000 | 100,000,000              |
| 법인세                 | -           | 15,000,000              | -           | 13,000,000               |
| 사업주의 과세소득           | 100,000,000 | 85,000,000              | 100,000,000 | 87,000,000               |
| 소득세                 | 24,300,000  | 8,564,000 <sup>1)</sup> | 23,300,000  | 10,267,500 <sup>2)</sup> |
| 총부담세액               | 24,300,000  | 23,564,000              | 23,300,000  | 23,267,500               |
| 총부담세액의<br>차이(개인-법인) | 736,000     |                         | 32,500      |                          |

1) 법인기업의 기업주 소득세 계산(개정전)

- ① 과세표준 : 85,000,000(배당금) + 16,150,000(귀속법인세) = 101,150,000
- ② 산출세액 : 17,100,000 + (101,150,000 - 80,000,000) × 36% = 24,714,000
- ③ 납부세액 : 24,714,000 - 16,150,000(배당세액공제) = 8,564,000

2) 법인기업의 기업주 소득세 계산(개정후)

- ① 과세표준 : 87,000,000(배당금) + 13,050,000(귀속법인세) = 100,050,000
- ② 산출세액 : 16,300,000 + (100,050,000 - 80,000,000) × 35% = 23,317,500
- ③ 납부세액 : 23,317,500 - 13,050,000 = 10,267,500

## 다. [사례 III]

[사례III]은 법인 과세소득(급여공제전)의 60%를 사업주의 급여로 지급하고 잔액을 유보한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개인기업의 경우 사업주의 급여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지만 법인기업의 사업주(대표이사)의 급여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법인의 사업주가 법인소득의 60%를 급여로 받아 손금처리하고 법인세차감후소득 전액을 유보하는 경우를 분석한다. 개인기업의 사업주는 종합소득의 과세표준계산에서 기본공제와 표준공제만을 받을 수 있지만 법인기업의 사업주가 급여로 받을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근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기본공제는 물론이고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등 특별공제와 신용카드사용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법인의 소득이 유보될 경우 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가격은 높아지며, 주주가 소유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10%이므로 배당에 의한 조세부담보다 훨씬 줄어든다.

<표 11>은 [사례III]의 세율인하효과와 법인전환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결과는 법인소득의 60%를 사업주의 급여로 지급하고 잔액을 유보한 경우 법인기업이 개인기업보다 조세부담이 훨씬 더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과세소득이 1억원인 경우 2004년도는 개인기업의 총조세부담액은 24,300,000원으로 법인기업의 13,285,000원보다 11,015,000원을 더 부담하고 있다. 2005년도는 개인기업의 총조세부담액은 23,300,000원으로 법인기업의 12,485,000원보다 10,815,000원을 더 부담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2005년도에는 2004년도에 비해 과세표준이 1억원인 경우 개인기업이 200,000원을 더 부담하는 것이다. 2004년도에는 과세표준이 2억원인 경우 개인기업의 총조세부담액은 60,300,000원으로 법인기업의 36,700,000원보다 무려 23,600,000원을 더 부담하고, 2005년도에는 개인기업의 총조세부담액은 58,300,000원으로 법인기업의 35,100,000원보다 23,200,000원을 더 부담하고 있다.

2005년의 법인기업의 세율인하효과는 과세소득 1억원은 2004년도보다 총조세부담액이 약 9.4% 정도 감소하며, 과세소득 2억원은 총조세부담액이 약 7.1% 정도 감소하였다.

2005년도 법인전환효과를 살펴보면 과세소득이 1억인 경우에는 개인기업보다 11,270,000원의 조세절감효과를, 과세소득이 2억인 경우에는 24,225,000원의 조세절감효과가 있다. 2004년도와 법인전환효과를 비교하면 과세소득 1억원에서는 약 1.0%인 255,000원이 증가한 11,270,000원의 절세효과, 과세소득 2억원에서는 2.6%인 625,000원이 증가한 24,225,000원의 절세효과가 나타나 과세소득이 커질수록 절세효과도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사례 III]에 따른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총조세부담액 차이 비교

| 과세표준        | 2004년              |                       |                       | 2005년(세율인하후)       |                       |                       | 세율인하<br>효과<br>(나)-(가) |
|-------------|--------------------|-----------------------|-----------------------|--------------------|-----------------------|-----------------------|-----------------------|
|             | 개인기업<br>총조세<br>부담액 | 법인기업<br>총조세<br>부담액(가) | 법인전환<br>효과<br>(개인-법인) | 개인기업<br>총조세<br>부담액 | 법인기업<br>총조세<br>부담액(나) | 법인전환<br>효과<br>(개인-법인) |                       |
| 100,000,000 | 24,300,000         | 13,285,000            | 11,015,000            | 23,300,000         | 12,030,000            | 11,270,000            | -1,255,000            |
| 110,000,000 | 27,900,000         | 15,424,000            | 12,476,000            | 26,800,000         | 14,032,000            | 12,768,000            | -1,392,000            |
| 120,000,000 | 31,500,000         | 17,563,000            | 13,937,000            | 30,300,000         | 16,034,000            | 14,266,000            | -1,529,000            |
| 130,000,000 | 35,100,000         | 19,702,000            | 15,398,000            | 33,800,000         | 18,036,000            | 15,764,000            | -1,666,000            |
| 140,000,000 | 38,700,000         | 21,841,000            | 16,859,000            | 37,300,000         | 20,038,000            | 17,262,000            | -1,803,000            |
| 150,000,000 | 42,300,000         | 23,980,000            | 18,320,000            | 40,800,000         | 22,040,000            | 18,760,000            | -1,940,000            |
| 160,000,000 | 45,900,000         | 26,119,000            | 19,781,000            | 44,300,000         | 24,042,000            | 20,258,000            | -2,077,000            |
| 170,000,000 | 49,500,000         | 28,258,000            | 21,242,000            | 47,800,000         | 26,044,000            | 21,756,000            | -2,214,000            |
| 180,000,000 | 53,100,000         | 30,397,000            | 22,703,000            | 51,300,000         | 28,046,000            | 23,254,000            | -2,351,000            |
| 190,000,000 | 56,700,000         | 32,536,000            | 24,164,000            | 54,800,000         | 30,048,000            | 24,752,000            | -2,488,000            |
| 200,000,000 | 60,300,000         | 34,675,000            | 25,625,000            | 58,300,000         | 32,050,000            | 26,250,000            | -2,625,000            |

〈참고〉 과세표준이 1억원 경우 계산내역

| 항 목                 | 개정전(2004년)  |                         | 개정후(2005년)  |                         |
|---------------------|-------------|-------------------------|-------------|-------------------------|
|                     | 개인기업        | 법인기업                    | 개인기업        | 법인기업                    |
| 기업의 과세소득(급여공제전)     | 100,000,000 | 40,000,000              | 100,000,000 | 40,000,000              |
| 법인세                 | -           | 6,000,000 <sup>1)</sup> | -           | 5,200,000 <sup>3)</sup> |
| 사업주의 과세소득           | 100,000,000 | 60,000,000              | 100,000,000 | 60,000,000              |
| 소득세                 | 24,300,000  | 7,285,000 <sup>2)</sup> | 23,300,000  | 7,285,000 <sup>4)</sup> |
| 총부담세액               | 24,300,000  | 13,285,000              | 23,300,000  | 12,485,000              |
| 총부담세액의<br>차이(개인-법인) | 11,015,000  |                         | 10,815,000  |                         |

1) 법인세 산출세액 :  $(100,000,000 - 60,000,000) \times 0.15 = 6,000,000$ 2) 근로소득 산출세액 :  $6,300,000 + (60,000,000 - 14,500,000 - 40,000,000) \times 0.27 = 7,285,000^{**}$ 

\* 근로소득공제액이다.

\*\* 근로소득세액공제액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이다.

3) 법인세 산출세액 :  $(100,000,000 - 60,000,000) \times 0.13 = 5,200,000$ 

4) 위 2)와 같음

[사례 III]에 따르면 과세소득이 1억원일 경우 법인전환효과가 11,270,000원이며, 과세소득이 2억원일 경우 24,225,000원으로 과세소득이 커질수록 법인전환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표 12>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1억원과 2억원인 경우의 외형 규모를 분석한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 법인의 외형에 따른 과세표준율은 4.3%로 과세표준이 1억원인 경우의 외형규모는 약 23억3천만원 정도이며, 과세표준이 2억원인 경우에는 약 46억5천만원 정도이다. 따른 과세표준율이 가장낮은 보건업은 1.1%로 과

세표준이 1억원인 경우의 외형은 90억9천만원, 2억원인 경우의 외형은 181억8천만원 정도이다. 반대로 과세표준율이 가장 높은 전기·가스·수도업은 10.8%로 과세표준이 1억원인 경우의 외형은 약 9억2천만원, 과세표준이 2억원인 경우의 외형은 약 18억5천만원 정도이다. 제조업은 5.2%로 과세표준이 1억원인 경우의 외형은 19억2천만원, 2억원인 경우의 외형은 38억4천만원 정도이다.

〈표 12〉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른 외형규모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외 형           | 과세표준        | 과세표준<br>/ 매출액 | 과세표준1억원의<br>외형규모 | 과세표준2억원<br>의 외형규모 |
|-----------|---------------|-------------|---------------|------------------|-------------------|
| 합계        | 7,796,478,885 | 333,687,268 | 4.3%          | 2,326            | 4,651             |
| 축산·수렵·임업  | 7,570,077     | 173,064     | 2.3%          | 4,348            | 8,696             |
| 수산업       | 8,783,209     | 211,786     | 2.4%          | 4,167            | 8,333             |
| 광업        | 13,615,323    | 878,756     | 6.5%          | 1,538            | 3,077             |
| 제조업       | 2,886,573,753 | 149,461,532 | 5.2%          | 1,923            | 3,846             |
| 전기·가스·수도업 | 179,978,762   | 19,485,628  | 10.8%         | 926              | 1,852             |
| 건설업       | 693,749,418   | 23,077,943  | 3.3%          | 3,030            | 6,061             |
| 판매업       | 1,319,973,645 | 31,222,540  | 2.4%          | 4,167            | 8,333             |
| 음식·숙박업    | 29,073,231    | 1,641,940   | 5.6%          | 1,786            | 3,571             |
| 운수·창고·통신업 | 340,755,730   | 14,411,448  | 4.2%          | 2,381            | 4,762             |
| 금융·보험업    | 1,767,290,207 | 64,878,658  | 3.7%          | 2,703            | 5,405             |
| 부동산업      | 112,407,321   | 5,006,933   | 4.5%          | 2,222            | 4,444             |
| 서비스업      | 297,617,199   | 16,723,652  | 5.6%          | 1,786            | 3,571             |
| 보건업       | 42,074,993    | 482,719     | 1.1%          | 9,091            | 18,182            |
| 기타        | 97,016,017    | 6,030,669   | 6.2%          | 1,613            | 3,226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업태별 법인세 신고현황, 2000~2004년 참조

#### 라. [사례 IV]

[사례 IV]는 법인 과세소득(급여공제전)의 60%를 사업주의 급여로 지급하고 법인세차감후소득 잔액을 배당한 경우를 분석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법인의 사업주가 법인소득의 60%를 급여로 받아 손금처리하고 법인세차감후소득 잔액을 사업주에게 배당하는 경우를 분석한다. 물론 법인의 소득잔액을 배당하는 기업은 없을 것이지만 [사례 3]에서는 전액 유보하는 경우를 살펴보았고, 여기에서는 전액 배당하는 것을 살펴봄으로써 조세부담의 절감 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경우에 법인기업의 사업주의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된다. 배당소득의 경우 거주자별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되지만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금융소득은 전액 종합과세된다. 배당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경우 배당소득금액은 배당소득에 귀속법인세(Gross-up)를 가산

하여 계산하고,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배당소득의 귀속법인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세액공제한다.

<표 13>에 따르면 법인소득의 60%를 사업주의 급여로 지급하고 잔액을 배당한 경우 법인기업이 개인기업보다 조세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과세소득이 1억원인 경우 2004년도에는 개인기업의 총조세부담액은 24,300,000원으로 법인기업의 18,385,000원보다 5,915,000원을 더 부담하고 있다. 2005년도에는 개인기업의 총조세부담액은 23,300,000원으로 법인기업의 16,902,000원보다 6,398,000원을 더 부담하고 있다.

과세소득이 2억원인 경우 2004년도에는 개인기업의 총조세부담액은 60,300,000원으로 법인기업의 52,911,200원보다 7,388,800원을 더 부담하고 있다. 2005년도에는 개인기업의 총조세부담액은 58,300,000원으로 법인기업의 52,449,400원보다 5,850,600원을 더 부담하고 있다.

2005년의 법인기업의 세율인하효과는 과세소득 1억원은 2004년도보다 총조세부담액이 약 8.0% 정도 감소하며, 과세소득 2억원은 총조세부담액이 약 10.8% 정도 감소하였다.

2005년도 법인전환효과를 살펴보면 과세소득이 1억인 경우에는 개인기업보다 6,398,000원의 조세절감효과를, 과세소득이 2억인 경우에는 11,151,000원의 조세절감효과가 있다. 2004년도와 법인전환효과를 비교하면 과세소득 1억원에서는 약 8.1%인 483,000원이 증가한 6,398,000원의 절세효과, 과세소득 2억원에서는 약 50.9%인 3,762,200원이 증가한 11,151,000원의 절세효과가 나타나 과세소득이 커질수록 절세효과도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의 <표 12>에 의하면 제조업의 경우 매출액이 약 21억원인 경우 2005년도에는 법인기업은 개인기업보다 총조세부담액을 630만원이상 절감할 수 있다.

<표 13> [사례 IV]에 따른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총조세부담액 차이 비교

| 과세표준<br>크기  | 2004년              |                       |                       | 2005년(세율인하후)       |                       |                   | 세율인하<br>효과<br>(나)-(가) |
|-------------|--------------------|-----------------------|-----------------------|--------------------|-----------------------|-------------------|-----------------------|
|             | 개인기업<br>총조세<br>부담액 | 법인기업<br>총조세<br>부담액(가) | 법인전환<br>효과<br>(개인-법인) | 개인기업<br>총조세<br>부담액 | 법인기업<br>총조세<br>부담액(나) | 법인전환효과<br>(개인-법인) |                       |
| 100,000,000 | 24,300,000         | 18,385,000            | 5,915,000             | 23,300,000         | 16,902,000            | 6,398,000         | -1,483,000            |
| 110,000,000 | 27,900,000         | 21,034,000            | 6,866,000             | 26,800,000         | 19,391,200            | 7,408,800         | -1,642,800            |
| 120,000,000 | 31,500,000         | 25,210,720            | 6,289,280             | 30,300,000         | 21,896,240            | 8,403,760         | -3,314,480            |
| 130,000,000 | 35,100,000         | 28,673,280            | 6,426,720             | 33,800,000         | 24,416,760            | 9,383,240         | -4,256,520            |
| 140,000,000 | 38,700,000         | 32,135,840            | 6,564,160             | 37,300,000         | 26,937,280            | 10,362,720        | -5,198,560            |
| 150,000,000 | 42,300,000         | 35,598,400            | 6,701,600             | 40,800,000         | 30,180,500            | 10,619,500        | -5,417,900            |
| 160,000,000 | 45,900,000         | 39,060,960            | 6,839,040             | 44,300,000         | 33,574,200            | 10,725,800        | -5,486,760            |
| 170,000,000 | 49,500,000         | 42,523,520            | 6,976,480             | 47,800,000         | 36,967,900            | 10,832,100        | -5,555,620            |
| 180,000,000 | 53,100,000         | 45,986,080            | 7,113,920             | 51,300,000         | 40,361,600            | 10,938,400        | -5,624,480            |
| 190,000,000 | 56,700,000         | 49,448,640            | 7,251,360             | 54,800,000         | 43,755,300            | 11,044,700        | -5,693,340            |
| 200,000,000 | 60,300,000         | 52,911,200            | 7,388,800             | 58,300,000         | 47,149,000            | 11,151,000        | -5,762,200            |

<참고> 과세표준이 1억원 경우 계산내역

| 항 목                 | 개정전(2004년)  |                          | 개정후(2005년)  |                          |
|---------------------|-------------|--------------------------|-------------|--------------------------|
|                     | 개인기업        | 법인기업                     | 개인기업        | 법인기업                     |
| 기업의<br>과세소득(급여공제전)  | 100,000,000 | 40,000,000               | 100,000,000 | 40,000,000               |
| 법인세                 | -           | 6,000,000 <sup>1)</sup>  | -           | 5,200,000 <sup>3)</sup>  |
| 사업주의 과세소득           | 100,000,000 | 60,000,000(근로)           | 100,000,000 | 60,000,000(근로)           |
| 소득세                 | -           | 34,000,000(배당)           | -           | 34,800,000(배당)           |
|                     | 24,300,000  | 12,385,000 <sup>2)</sup> | 23,300,000  | 11,702,000 <sup>4)</sup> |
| 총부담세액               | 24,300,000  | 18,385,000               | 23,300,000  | 16,902,000               |
| 총부담세액의<br>차이(개인-법인) | 5,915,000   |                          | 6,398,000   |                          |

1) 법인세 산출세액 :  $(100,000,000 - 60,000,000) \times 0.15 = 6,000,000$

2) ① 근로소득 산출세액 :  $6,300,000 + (60,000,000 - 14,500,000^* - 40,000,000) \times 0.27 = 7,285,000^{**}$

\* 근로소득공제액이다.

\*\* 근로소득세액공제액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이다.

② 분리과세배당소득 :  $(40,000,000 - 6,000,000) \times 0.15 = 5,100,000$

③ 총조세부담액 :  $7,285,000 + 5,100,000 = 12,385,000$

3) 법인세 산출세액 :  $(100,000,000 - 60,000,000) \times 0.13 = 5,200,000$

4) ① 근로소득 산출세액 :  $5,900,000 + (60,000,000 - 14,500,000 - 40,000,000) \times 0.26 = 6,830,000$

② 분리과세배당소득 :  $(40,000,000 - 5,200,000) \times 0.14 = 4,872,000$

③ 사업주조세부담액 :  $6,830,000 + 4,872,000 = 11,702,000$

## V. 결 론

2005년부터 법인세의 경우 1억원 이하의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15%에서 13%로, 1억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27%에서 25%로 각각 2%의 세율을 인하 하였다. 소득세의 경우에는 각각 1%씩 인하하여 법인세의 인하폭이 더 크다. 법인세율인하는 세계적인 추세로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의 법인세율이 1억원 이하의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20%, 1억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34%에서 지금과 같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의 법인세율 인하 추세를 살펴보고, 법인세율이 인하되는 추세에서 2005년의 세율인하효과,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조세효익이 발생할 수 있는 외형 규모, 그리고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의 조세절감효과와 크기와 조건에 대해서 사례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많은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조세적인 측면에서 고찰한 경우에도 먼저 업체의 유형과 규모에 의하여 조세효익을 분석하여야 한다. 즉, 법인소득의 어느 정도를 배당하고 유보할 것인가, 대표이사의 급여는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고려되어야만 적절한 조세 절감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네가지 사례분석을 세율 인하효과와 법인전환효과를 분석하고, 과세표준율에 따른 법인전환의 외형 크기를 분석하였다.

- ① 법인의 경우 사업주의 급여를 계상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세차감후소득 전액을 법인에 유보할 경우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부담 세액이 동일해지는 과세표준과 외형크기를 분석하였다. 분석에 의하면 서울인 인하된 2005년도에는 전체기업 평균으로 외형크기가 약 5억2천만원 이상인 경우 법인으로 전화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외형의 규모가 제조업은 4억3천만원, 건설업은 6억7천만원, 판매업은 9억5천만원, 음식업은 3억9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조세부담상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 ② 법인의 경우 사업주의 급여를 계상하지 않고 법인이 법인세차감후소득을 전액 배당처리 하는 경우 개인기업의 총조세부담액과 법인기업의 총조세부담액의 차이를 과세소득의 크기에 의하여 분석하면 과세표준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조세부담상 법인이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 ③ 법인기업의 법인소득(급여공제전)의 60%를 사업주의 급여로 지급하고 잔액을 기업에 유보한 경우 총부담세액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법인기업의 사업주가 근로소득을 받은 경우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제외한 다른 공제는 받지 않는 것을 가정하여 분석한 것이다. 이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1억원 이상 2억원까지 그 액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법인기업의 조세부담이 줄어들어 개인기업보다 훨씬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났다. 법인기업의 과세소득이 1억원일 경우 60%를 사업주의 급여로 지급하며, 나머지 세차감후 소득은 유보하는 경우 법인전환효과가 11,270,000원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과세표준이 1억원을 일 경우 과세표준율이 가장낮은 보건업은 1.1%로 외형은 90억9천만원이며, 반대로 과세표준율이 가장 높은 전기·가스·수도업은 10.8%로 외형은 약 9억2천만원이다. 그리고 제조업의 과세표준율은 5.2%로 외형은 약 19억2천만원이다.
- ④ 법인기업의 법인소득의 60%를 사업주의 급여로 지급하고 잔액을 배당한 경우 법인기업이 개인기업보다 조세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법인전환효과를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경우는 [사례 III]으로 법인기업이 사업주의 급여를 계상하면서 법인세차감후소득을 전액 유보하는 경우이다. 그러면 사업주의 급여를 어느 정도 계상하는 것이 법인전환효과를 가장 많이 볼 수 있을까. 사업주의 급여와 유보를 고려하지 않은 [사례 I]과 사업주의 급여와 유보를 고려한 [사례 III]을 비교하여보면 [사례 III]이 법인전환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업주의 급여를 최대한 계상하면서 나머지 법인소득을 유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이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고문헌

- 김진수 · 박형수 · 안종석. 2003. 「주요국의 법인세제 변화 추이와 우리나라 법인세제의개편방향—법인세를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연구보고서03-05,
- 박형수. 2004. 「감세정책의특징 및 경제 · 재정에 미치는 영향—실증분석과 선진국의 경험」. 한국조세연구원.
- \_\_\_\_\_. 2004. “법인세를 인하에 대한 쟁점분석”. 한국조세연구원 재정포럼 2월호.
- 안종석. 1999. 「2000년대의국제환경변화와 조세정책」. 한국조세연구원.
- \_\_\_\_\_. 1994. 「조세정책이대내외직접투자에미치는효과분석」. 한국조세연구원. 연구보고서 94-12.
- \_\_\_\_\_. · 최준욱. 2003.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성과 및 향후 운용방안」. 한국조세연구원.
- Edwards, Chris and Weronique de Rugy. 2002. International Tax Competition : A 21st-Century Restraint on Government. Policy Analysis, No. 431, April
- GAO. 2001. “Work Opportunity Tax Credit : Employers Do Not Appear to Dismiss Employees to Increase Tax Credits.
- Journard, Isabelle. 2001. Tax Systems in European Union Countries. OECD, ECO/WKP (2001)27,
- Tannery, Fredrick. 1998. Targeted Jobs Tax Credits and Labor Market Experience. Employment Policy Institute,
- Yoo, Kwang-Yeol. 2003. Corporate Taxat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come 1991-2001. OECD, ECO/WKP(2003)19,
- James, S. and C. Matier. 1995. The Long-Run Economic Impacts of Government Debt Reduction. Department of Finance Canada Working Paper, No. 95-08,
- Jorgenson, Dale and Ralph Landau. 1993. Tax Reform and the Cost of Capital, The Brookings Institution, Washington, D.C.,
- \_\_\_\_\_, Dale W. and Kun-Young Yun. 1991. Tax Reform and the Cost of Capital, Oxford University Press.
- Judd, K.L. 1993. Short-Run Analysis of Fiscal Policy in a Perfect-Foresight Model.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pp. 298~319.

## Analysis of Taxation Effect on the Conversion of a Private Enterprise Into Corporation

Ki-Soo Oh\* · Seok-Gon Yoon\*\*

—<Abstract>—

This paper first looks into the tendency of corporation tax rates reduction of Korea and other countries and analyzes the effect of tax rates reduction in the 2005 year.

In case of a private enterprise's conversion into corporation, this paper aims to find out the corporation scale of taxation effect and the size and condition of the effect of tax rates reduction through a case study.

The analysis shows that the conversion of the enterprises with the average scale size of five hundred and twenty million into corporation has an advantage in 2005, the year of taxation reduction. According to business types, the cases of a manufacturer of four hundred and thirty million's scale, a construction company of six hundred and seventy million's scale, a sales business of nine hundred and fifty million's scale, and a food industry of three hundred and ninety million's scale has an advantage of taxation reduction coming from a private enterprise's conversion into corporation

The analysis of the case study reveals that the most taxation effect on the conversion of a private enterprise into corporation has happened when corporation retains corporation tax balance income by appropriating the businessman's salary. What amount of appropriation of the businessman's salary brings the most taxation effect on the conversion of a private enterprise into corporation? The answer is that the maximum appropriation of the businessman's salary and reservation of the remaining corporation income has the most effectiveness.

<Key words> corporation tax, the conversion of a private enterprise into corporation

---

\* Associate Professor, Dept. of Tax & Accounting Information, Kimpo College

\*\* Associate Professor, Namseoul University Department of Management & Tax